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63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홍기원·문진석·권향엽

이건태 • 박지원 • 한민수

신영대 · 김영배 · 전현희

윤종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와 특별조치권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을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및 특별조치권의 대상 범위를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 등을 공고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비상 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 및 제9조).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시행지역, 계엄사령관과 그 관장사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관장사항"을 "관장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모든 행정사무"를 "행정사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을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 조치내용을"을 "그 조치의 필요성및 내용 등을"로, "공고하여야"를 "국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u>시행지역</u>	시행지역 <u>,</u>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계엄사령관과 그 관장사항
한다.	,
제7조(계엄사령관의 <u>관장사항</u>) ①	제7조(계엄사령관의 <u>관장사항 등</u>)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	①
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u>모든</u>	<u>행정</u>
<u>행정사무</u> 와 사법사무를 관장한	사무
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목적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
	<u> 여야 한다</u> .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	①
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u>체</u>	<u>계</u>
포・구금(拘禁)・압수・수색・	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주 • 이전 • 언론 • 출판 • 집회	범위에서 체포・구금(拘禁)・압
<u>· 결사 또는 단체행동</u> 에 대하	수・수색・언론・출판・집회・
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u> 결사</u>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u>그 조치</u>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의 필요성 및 내용 등을----국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